

「NH고향사랑기부적금」 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 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NH고향사랑기부적금 (지역명: 「또 하나의 고향」선택)

■ 상품특징 :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 기여형 공익상품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작성기준일: 2024. 6. 10.)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 개인 (1인 1계좌)	
상품유형	■ 자유로우대적금	
거래방법	■ 신규 : 영업점, 비대면 채널 ■ 해지 : 영업점, 비대면 채널(만기자동해지 서비스 이용 가능)	
적립금액	■ 신규 시 1만원 이상, 매회 1천원 이상, 매월 50만원 이내 자유적립 ※ 단, 만기일 전 3개월 이내에는 그 이전에 적립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적립 불가	
계약기간	■ 12개월 이상 36개월 이내 (월 단위)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중도해지 시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원금 또는 이자지급 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 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자유로우대적금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 + 0.3%p ※ NH고향사랑기부적금 기본이자율 등재위치					
기본이자율 (연%, 세전)	- 농협인터넷뱅킹>금융상품몰>농협은행>예금금리>적립식(NH고향사랑기부적금)					
	기간	12개월 이	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자율		3.40	3.45	3.70	
	☞ 작성기준일 현재 기본이자율이며 실제 적용이자율은 가입일의 고시금리에 따름					
특별이자율 (연%, 세전)	■ 가입 신규일 기준 고시된 고향사랑특별이자율 적용('24.6.10.기준 0.10%) - 고향사랑특별이자율은 금리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당행 영업점 또는 비대면 채널 상품 상세페이지에 고시됩니다.					
우대이자율 (연%p, 세전)	■ 최대 연 0.9%p ① 고향사랑기부금을 건당 5만원 이상 납부한 가입자 우대 ^{주1)} : 0.5%p ② 상품 가입일 기준 만 65세 이상 가입자: 0.1%p ③ 상품 가입일 기준 만 19~34세인 가입자: 0.3%p ④ NH채움카드 전국 농협판매장 또는 「zgm.고향으로카드」이용실적* 우대: 0.1%p - 가입 월부터 만기 전전월말까지 농협은행 NH채움(개인 신용/체크) 카드로 전국 농협판매장, 농협주유소 이용실적이 월 평균 5만원 이상이거나, 농협은행「zgm.고향으로카드」(개인 신용/체크) 월 평균 5만원 이상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 이용실적은 카드 승인 기준(현금서비스 제외) ***********************************					
	■ 자유로우대적금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경과	 기간		적용이자율 / 적용	8률	
	3개월	미만		0.1%		
	6개월	미만	중도해지 기준이자율 × 5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중도해지이자율 (연%, 세전)	9개월 미만		중도해지 기준이자율 × 6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11개월 미만		중도해지 기준이자율 × 7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11개월 이상		중도해지 기준이자율 × 8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 중도하 ■ 중도해?	I지 최저 디 기준이	이자율은 0.1 자율 : 적금가	사리까지 적용(소수 넷 % 입일 당시 고시된 자유.	로우대적금 기본이자율	

■ 경과월수는 계약월수를 초과할 수 없음, 월 미만 일수는 버림



	■ 계산방법(예시)		
중도해지이자 산출근거	* 50% * 50% * 70%		
	■ 자유로우대적금 만기후이자율 적용		
	만기후 1년 이내 만기시점 자유로우대적금 계약기간별 고시금리의 50%		
만기후이자율 (연%, 세전)	만기후 1년 초과 만기시점 보통예금 이자율		
(E70, All E)	※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만기일 당시 농협은행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 만기 후 이자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 (단, 만기일 이후 이자율이 변동된 경우 변동일로부터는 변동된 만기 후 이자율 적용)		
만기이자 산출근거	■ 입금 건별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 [입금건별 이자계산 산식(예시)] 입금금액×약정이자율×일수(회차일~만기일 전일)/365 1의시 2의시 3의시 마지막회사 만기일 입금금액 X 약정이자율 X 일수/365 입금금액 X 약정이자율 X 일수/365		
	※ 위 그림은 만기해지이자 산출방법을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제 적용 되는 만기해지이자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양도 및 담보제공	■ 양도 불가 ■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의 90% 범위 내에서 가능		
부분인출	■ 불가		
재예치	■ 불가		



기금조성	■ 연간 평균잔액 0.1% 해당액을 연간 최대 10억원 한도로 농협은행이 기금을 적립하여 농업·농촌 및 사회공헌 사업용도로 지원
예금 해지시 불이익	■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 이자 적용 등
계약해지방법	■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 가능 ■ 만기자동해지 서비스 이용 가능 ■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 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 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자료열람 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및 출연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최고 5천만원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자동이체	 자동이체 출금계좌가 타행일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서 자동이체 신청해야하며, 타행자동이체는 신청 은행의 자동이체 정책에 따라 익영업일에 입금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월 말일로 자동이체 설정 시 말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처리됨에 따라 다음 달 첫 영업일에 입금되어 해당 월 입금이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말일 자동이체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NH고향사랑기부적금 타행자동이체 등록: 매월 말일, 월 50만원(최대한도) '24. 3. 31.(일) 자동이체 미처리, 4.1.(월) 자동이체 처리 → 이후 자동이체 처리일자 5.31.(금) → 3월 미납된 금액은 소급 적용 불가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3 유의사항

- 고향사랑기부 우대금리 적용 방법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영업점 창구 또는 '고향사랑e음(http://ilovegohyang.go.kr)' 사이트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한 경우 : 별도의 서류(고향사랑기부금 납부 증빙서류) 제출 없이 고향 사랑기부 우대금리가 자동 반영*(단, 실시간 바로 반영되지 않고 일정기간 이후 반영)됩니다.
 - * 이 적금 가입연도 초일부터 만기전전월까지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해 고향사랑 기부 우대금리가 자동 반영되고, 이후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적금 만기일 전 영업일까지 가입고객이 별도로 아래 고향사랑기부금 납부 증빙서류 제출 방법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고 고향사랑기부 우대금리 적용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 (2023.10.16. 이전 가입자) 고향사랑기부금 납부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
 - ① 농협은행 영업점 제출 또는
 - ② 농협은행 스마트뱅킹>금융상품몰>예금>우대금리신청>채팅상담을 통해 제출
 - ※ 고향사랑기부금 납부 후 고향사랑기부 우대금리 적용 신청 시 필요서류
 - 고향사랑 기부금을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영업점 창구 납부 시 :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후 수령 받는 거래내역 확인서
 - 고향사랑 기부금을 고향사랑e음(http://ilovegohyang.go.kr) 사이트에서 납부 시 :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 : 고향사랑기부금 납부 영수증 등)



- 만기자동해지 서비스 등록 계좌의 경우 고향사랑기부우대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서는 만기일 전영업일까지 신청 및 등록 되어야 합니다.
- ▶ (2023.10.16. 이후 가입자) '고향사랑e음(http://ilovegohyang.go.kr)' 납부 또는 영업점 납부에 대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우대금리 자동반영(납부 다음달 10일 이후 적용)
- 개인 고객의 경우「또 하나의 고향」을 선택하여 선택지역 통장 네이밍 인자가 가능합니다.
 - * 추후 선택지역 변경은 불가합니다.
- 이 적금의 연간 평균잔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10억원 한도)을 당행에서 기금으로 적립 및 조성합니다.
 - * 농협은행은 고객이 선택한「또 하나의 고향」시·도·광역시에 우선적으로 기금을 적립하여 해당 지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지역에 기금 적립이 편중되는 경우 당행은 고객이 선정한 지역과 상관없이 기금 전체를 통합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 공익기금은 농업·농촌 및 사회공헌 사업용도로 지원하며 지원 대상, 방법, 시기 및 금액에 대한 기준은 농협은행이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합니다.
 - * 상품이 중단될 경우 기금적립은 자동 종료됩니다.

※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banking.nonghyup.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 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개발부서: 개인고객부)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압류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과기간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